##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81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조승환·서일준·권영세

김승수 • 이인선 • 구자근

인요한 · 김성원 · 유용원

임이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 교부 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거·교통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교통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

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제24조에 따른 주거·교통 등의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 9. 제27조에 따른 노후 · 유휴시설의 정비 · 활용에 관한 사항
- 10. 제2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국고보조금의 지원)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시・군・구기본계획은 다음	②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8. 제24조에 따른 주거·교통
	등의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u>&lt;신 설&gt;</u>	9. 제27조에 따른 노후・유휴시
	설의 정비・활용에 관한 사항
<u> &lt;신 설&gt;</u>	10. 제2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
	원에 관한 사항
<u> 8.·9.</u> (생 략)	<u>11.·12.</u> (현행 제8호 및 제9호
	와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제14조의2(국고보조금의 지원) 국
	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
	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
	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
	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
	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